삼정 KPMG

기획재정부,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세 / 국제조세 분야

2022.7

삼정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Ⅰ. 법인세 분야

1.	법인세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5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6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6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7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8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9
	(5)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10
	①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	10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11
	(6)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	12
	(7)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12
	(8)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13
	(9)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13
	(10)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법」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14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15
	②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신설	15
	(11)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	16
	(1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17
	(13)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합리화	18
2	2. 조세특례	20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	20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1
	(3)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23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23
	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	24
	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5
	(4)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26
	(5)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27
	(6)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28
	(7)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29
	(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30
	(9)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31
	(10)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2
	(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3
	(12)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34
	(13)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35
	(1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	36
	. 국제조세 분야	
1	. 글로벌 최저한세	37
	(1) 통칙	37
	① 정의	37
	②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 ······	38
	(2)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39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39
	②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	39
	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40

	④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40
	⑤ 신고 후 조정	41
	⑥ 실효세율의 계산	41
	⑦ 추가세액의 계산	42
	(3) 추가세액의 과세	43
	① 소득산입규칙 적용	43
	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44
	(4) 특례	45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	45
	②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45
	③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46
	(5) 신고 및 납부 등	46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46
	②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47
	③ 경과조치	47
	④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48
2	2. 기타	49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49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	50
	(3)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	51
	①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	51
	②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	52
	(4)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53
	(5)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54

I . 법인세 분야

1. 법인세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과세체계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긴	<u>·</u> 조정
0	○ 세율 및 과세표준		0	1)최고세율을 2 2)중소·중견기역 까지 10% 된		5억원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10% (중소 · 중견기업)	20%
	2~200억원	20%		5~200억원		
	200~3,000억원	22%		200억원 초과		22%
	3,000억원 초과	25%				
				,	특례세율 적용 은 현행과 동일 등이 50% 초고	용 제외하게 제외하게 지분을법이거나배당의

〈개정이유〉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법 §15 · 21 · 41 · 57 · 57의2 개정, §18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② 혼성금융상품*, ^③ 간접투자회 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 (익금 불 산입률) 95%
	□ 해외자회사(기존법인을 인수한 경우) 주식 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원가 - 인수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 ※ 구체적인 범위 금액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법인법 §57⑤, 법인령 §94⑨)

현 행	개 정 안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지분율 25%* 이상,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이상 보유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좌 동)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의2·18의3)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 불 산입			□ 기업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어
			따라 제도 합리	화
○ 기업형태 (지주,	/일반회사, 상징	}-		
/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리	}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 일반법	인 >			
상장법	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100% 30%이상 100%미만	100% 50%		30%이상 50%미만	80%
30%미만	30%		30%미만	30%
비상장법	1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50%이상 100%미만 50%미만	100% 50% 30%			
< 지주회	< 지주회사 >			
상장법(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이상 100%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0% 90% 8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80%이상 100% 50%이상 80%미만 50%미만	100% 90% 80%			

⟨개정이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년 및 '24년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 택 허용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 · 45 · 46의4 · 76의13 · 91)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 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60% → 80%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ㅇ (좌 동)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법 §2 · 76의8 등)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 적용대상 확대
이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 법인 [*]
* [•] 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 포함	*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 주·스톡옵 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❷(좌 동)
□ 연결자법인 추가·배제	□ (좌 동)
ㅇ 새로 완전 지배 하는 경우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 을 새로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90% 이상 지배가 성립된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법인 추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
	자법인 추가
ㅇ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지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연도부터 배제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개정이유〉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인법 §76의19)

현 행	개 정 안
□ 연결소득의 연결법인 간 배분방법	□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①, ② 중 선택 허용)
 여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에 비례 배분 	① (좌 동)
<추 가>	②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 구체적 배분방법은 시행령 규정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의 납부 규정
o 연결모법인 은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ㅇ (좌 동)
 연결자법인은 개별귀속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 	
<신 설>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 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 §120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 출의무 부과
	(제출대상)「특정금융정보법」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내용)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
	○ (제출시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7)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18)

현 행	개 정 안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범위 조정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ㅇ (좌 동)
<신 설>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을 한도로 인정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8)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법 §163의3 신설 등, 법인법 §120의4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9)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ㅇ「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7) [)
학교법인	ㅇ (좌 동)
ㅇ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23.1.1.부터 적용 의무
- ▶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 ▶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법인법 §30, 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 산입	□ 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
○ (적용대상)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익 인식금액 및 귀속시기는 시행령에 규정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 준비금* 손금 산입 	
* 장래 지급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ㅇ (좌 동)
(익금산입) 손금산입액은 다음사업연도 또는 3년 후 환입	

〈개정이유〉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법인법 §42의3 · §31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IFRS17 적용 보험회사는 다음 2가지 방안 중 택일
	❶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기초 보험부채
	○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②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유 지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 및 미경과보험료 합 계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개정이유〉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 화(법인법 §47)

현 행	개 정 안
□ 물적분할 시 적격요건	□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①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로 분할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ㅇ (좌 동)
③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수행	
④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신 설>	ㅇ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규정 불명확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조문 명확화

(1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1)

현 행	개 정 안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바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ㅇ (좌 동)
<신 설>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2.12.31.	o '25.12.31.

⟨개정이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소득법 §129④~⑦, 법인법 §57①·73, 소득·법인법 §57의2 신설)

개 정 안 혀 했 □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 가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 계산방식 합리화 (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3.1.1. 시행) 0 개인투자자의 경우 ㅇ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 가접투자회사·신탁 등이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소득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 (펀드소득¹⁾ x 원천징수세율) 후 워천징수 - 조정 외국납부세액²⁾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 o 법인투자자의 경우 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 조정비율(원천징수): 시행령 규정 워천징수 ① 국내 2 외국원천징수세율: 1 - 국내원천징수세율 - (투자신탁 이익外) 투자자의 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국내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가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원천징수세율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신출세액

- x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및 법인투자자 법인세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 산출세액 원천징수세액¹⁾ 조정 외국납부세액²⁾
 -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 조정비율(확정신고): 시행령 규정
 - ①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종합소득세율 등
 - ②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 국내종합소득세율 등 외국원천징수세율

- ※ 법인투자자의 투자신탁 이익외 펀드소득:1- 국내법인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 산출세액 x (편드소득 ÷ 종 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 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법인법§57의2) 폐지 등 종전 개정내용도 '25.1.1.로 시행 유예

2. 조세특례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조특법 §100의32)

현 행	7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병용	기한	종료
○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 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성 조세 폐지

〈경과조치〉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

*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증가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2개 사업연도 동안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세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1-
현 행	개 정 안

-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 **1**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 고용증기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공제액 (단위:만				
구 분	중소 (3년 지원)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 보험료 × 공제율

구 분	중소 (공제율)	
상시근로자 (2년 지원)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	100%	

-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
-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 (적용대상) 모든 기업*
 -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 (기본공제)

: 고용증기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공제액 (단위:만원)				
구 분	중소 (3년 지원)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u>850</u>	<u>950</u>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u>1,450</u>	<u>1,550</u>	800	400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
 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
 공제 대상에 추가
 -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이휴직 복귀자

공제율

구 분	공제율		
1 4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	30%	15%	

-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1 4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000	700	

- **6**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율			
1 4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30%	15%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TE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 200	0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	900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 (3)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간 폐지
○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ㅇ (좌 동)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삭 제>
○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o (대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	ㅇ (좌 동)
○ (감면율) 5년간 50%	ㅇ 10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	ㅇ (좌 동)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2.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좌 동)
○ (취 업기관) 연구기관 등 [*]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 기관, 대학 등	
○ (감면율) 5년간 50%	ㅇ 10년간 50%
○ (적용기한) '22.12.31.	o '25.12.31.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 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4)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기한 연장 및 대기업 적용배제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ㅇ (좌 동)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 20%, 중견 10%, 대 5% 	o 대기업 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	o '25.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현 행				ブ	내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조정					
○ 당기분 기본공제(A)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B)			ㅇ (좌 동)						
	- (기본공자 × 기본·	•	ł해 연 <u>5</u>	E 투자º	H	- 기본공제	율 상	·हं	
	7 8		공제율(%)			7 8		공제율(%)	
	구 분	대	중견	중소		구 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일 반	1	<u>5</u>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신성장원천기술	3	<u>6</u>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국가전략기술	<u>8</u>	8	16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 3% 국가전략기술 : 4%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 (좌 동)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 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o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o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 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ㅇ (좌 동)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추 가>	ㅇ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① 또는 ②	○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
①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1 (좌 동)
②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❷ 2년 내 → 3년 내
○ (감면내용)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ㅇ (좌 동)
○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분부터 적용

(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ㅇ 세액공제 대상 추가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	
* (공제율) 대3%, 중견7%, 중소10%	
<추 가>	- OTT* 콘텐츠 제작비
	* O ver T he T 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적용기한) '22.12.31.	o '25.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9)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3)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 톡옵 션* 행사이익**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
<신 설>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ㅇ (좌 동)
<추 가>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3③)

현 행	개 정 안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 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소재· 부품·장비 사업·자산 양수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 자산 양수를 추가
(대상기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을 추가
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ㅇ (좌 동)
○ (적용기한) '22.12.31.	o ′25.12.3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업종 감면율 변경		
○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좌 동)		
○ (감면율) 5~30%		ㅇ (좌 동)		
본점		감면 [.]	율(%)	
소재지	업 종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u>구</u> 포션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지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 ○ (적용기한) '22.12.31.		* 특례 폐지 ○ '25.12.31.		
`	(, -)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의3)

현 행	개 정 안
□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o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신보·기보에 대한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中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원지원자금 출연금	
o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	ㅇ (좌 동)
o 수탁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시 투자금액의 1/3/7% (대/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추 가>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해당 자산 시가의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2.12.31.	° ′25.12.31.

〈개정이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 인세 감면 확대(조특법 §63·63의2)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하 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3년 이상 가동 후 이전한 공장·법인	ㅇ (좌 동)
○ (감면내용)	이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감면기간 확대
 ◆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지방광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로 이전시: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한하여 적용 **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① (좌 동)
②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 100% + 3년 50%	2 1) 10·3 외 기타지역, 2)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 등(3) 지역)으로 이전시: 7년 100% + 3년 50%
<추 가>	3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 [*] 으로 이전시: 10년 100% + 2년 5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다만,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 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제외)
○ (적용기한) '22.12.31.	o '25.12.3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 §12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 감면 종료사유 명확화
○ (감면요건)	
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② '23.12.31.까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③ 감면대상사업*을 할 것*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 (감면율 및 감면기간) - 3년간 100% + 2년간 50%	ㅇ (좌 동)
<신 설>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종료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의 취소일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 (2년) 만료일 (재지정된 경우 제외)

〈개정이유〉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실효성 제고

Ⅱ. 국제조세 분야

1. 글로벌 최저한세

(1) 통칙

① 정의(국조법 §6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주요 용어
	○ 다국적기업그룹 : 복수의 국가 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그룹
	ㅇ 구성기업 :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 (법인·조합·신탁 등)
	○ 최종모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o 소유지분: 기업의 이익·자본금·준비금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출자지분

〈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국조법 §61 · 62 · 6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결매출액기준) 적용대상그룹의 매출액 기준 제시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12개월로 환산
	□ (제외기업) 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기업 정의
	1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②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
	③ ① · ❷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특정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인 것으로 선택 가능
	□ (납세의무자) 국내 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 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 세로서 납부
	□ (소재지)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또는 설립지국에 소재
	○ 투과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 으로 보거나 설립지국에 소재
	*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의 소득·지출·손익이 소유자에게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
	o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 결정
	□ (납세지) 「법인세법」상 납세지 준용

〈개정이유〉 연결매출액기준, 제외기업, 납세의무자 및 구성기업의 소 재지·납세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국조법 §64① · 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
	o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이익·손실 에 가산되는 순조세비용, 차감되는 배당소득 등의 조정항목 을 반영하여 계산
	○ 국제해운소득과 관련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
	* 나용선 임대, 컨테이너 임대·보관 등 국제여객·화물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인식한 당기순이익

〈개정이유〉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국조법 §64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 및 회계기준
		ㅇ (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상 순손익으로,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
		 (회계기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되는 기업회계기준
		- 최종모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 하 최종모기업과 다른 회계기준 (국제 회계기준 등) 적용 가능

〈개정이유〉회계상 순손익 정의 및 회계기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의 배분 (국조법 §64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본사와 고정사업장간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o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하지 않음
	□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주주구성기업 *에 배분
	*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개정이유〉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원칙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조정대상조세의 계산(국조법 §6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 방법
		○ 당기법인세비용 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 에 총이연 법인세조정금액 등 조정사항을 반영 하여 계산
		*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재무제표에 계상한 세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등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일시적차이·전기결손금 관련 이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개정이유〉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신고 후 조정**(국조법 §6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전 사업연도 의 대상조세 납부의무 가 경정 등으로 인해 변동 된 경우 처리방법
	○ (납부의무 증가) 당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산 출시 대상조세에 합산
	○ (납부의무 감소)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실효세율을 재계산
	- 실효세율 재계산 결과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 한 경우 당기추가세액가산액 으로 처리

〈개정이유〉이전 사업연도의 조세채무 변동시 조정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실효세율의 계산(국조법 §6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법
	 하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계산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
	
	* 투자기업인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은 동일 국가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개정이유⟩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추가세액의 계산(국조법 §6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
	ㅇ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국가내 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 ** 실효세율 15% 미충족 시 소재지 국가에 납부하는 미달세액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ㅇ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구성기업추가세액 = $A \times \frac{B}{C}$
	A: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B: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포함하지 않음)

〈개정이유〉 국가 및 구성기업별 추가세액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추가세액의 과세

① 소득산입규칙 적용(국조법 §6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최종모기업에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이 납부
	□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 업이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제3자가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간모기업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 이 부담하는 추가세액배분액 계산
	○ 추가세액배분액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 소득산입비율 = 1 - <u>귀속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u>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개정이유〉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저율과세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 가세액의 과세 방식을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국조법 §7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자회사소재지국이 자회사에게 해당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는 경우 또는 모기업 소재지국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배분 비율을 곱하여 국내에 배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 $= 50\% \times \frac{A}{B} + 50\% \times \frac{C}{D}$ A: 국내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모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국내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 D: 모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 ○ 국내에 배분된 추가세액은 중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개별 구성기업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율과세 구성기 업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을 과세하는 방식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특례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정 국가 [*] 의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❶ 평균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❷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이 1백만 유로 미만인 국가

⟨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72·7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수지분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은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
	□ (공동기업) 최종모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 동기업은 구성기업으로 간주
	○ 다만, 공동기업과 그 자회사 그룹을 별도의 다국적 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개정이유〉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 계산 특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조법 §7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산·부채의 이전 시 처리방법
	o ^① 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포함 , ^② 취득기업은 취득 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 [*] 의 경우 ^① 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제외, ^② 취득기업은 처분기업의 처분시 장부가액 사용하여 계산 ※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분할은 이에 해당

〈개정이유〉조직재편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고 및 납부 등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국조법 §8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의무
	o 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15개월 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 국외 구성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출의무 면제
	- 이 경우, 국내 구성기업은 그 제출한 국외 구성 기업에 관한 사항을 15개월 내 신고

〈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방법 및 기한 등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8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관련 사항
	○ (신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속하는 달까지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 제출
	○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개정이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관련 사항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경과조치(국조법 §78·7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규칙 적용대상이 되는 첫 사업연도(경과연도) 특례 적용
	○ (계산특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시 재무제 표 상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
	 ○ (신고기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사업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 18개월)
	□ 해외활동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규칙적용 첫 5년 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을 면제
	* [©] 6개 이하 국가 소재 & [©] 유형자산 순장부가치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하

〈개정이유〉 제도 도입 초기 원활한 적용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국조법 §84)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o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자	
o 정상가격 산정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추 가>	o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구성기업
<추 가>	상기 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구성기업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정보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기타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
	① (대상채권) 국채(국채법§5①), 통화안정증권
	② (투자방법)
	i) (직접 투자)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등 투자
	ii) (간접 투자) 적격외국금융회사 *를 통해 국채 등 투자
	*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 승인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③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④ (원천 <mark>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mark> 의 투자자 중 거 주자·내국법인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 가 직접 신고·남부

〈개정이유〉 국채 등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법 §156의2·6, 법인법 §98의4·6, 소득령 §207의2·8, 법인령 §138의4·7)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	□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 서류 및 절차 보완
 ○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 	ㅇ (좌 동)
-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	❶ 첨부서류 추가
	-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신 설>	2 절차 보완
	-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
	-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경정청구) 실질귀속자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ㅇ (좌 동)
- (첨부서류)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 (첨부서류 추가)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개정이유〉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 ①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국조법 §29②)

현 행	개 정 안
□ 수동소득 특례 [*] 의 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거나 도매업 특례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합산 과세(CFC)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 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총 수입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이 다음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득 예외 인정
❶ 주식·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좌 동)
❸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 투자신탁 ·기금에 대한 투자	
상기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매각손익	ㅇ (좌 동)
- 단, 다음은 수동소득에서 제외	- 제외항목 추가
· CFC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장비 매각손익	ㆍ (좌 동)
<추 가>	· 금융업·보험업에 속하는 특 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 수 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 식·채권의 매각 손익

〈개정이유〉 금융·보험업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국조법 §28)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 소득금액 비율 적용 합리화
적용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 <u>각 시업연도말 현재</u> ①, ② 모두 	○ 1, 2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	주식을 보유
1 자회사 [*] 의 주식등을 배당	❶ (좌 동)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보유할 것	
*①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 소유, ②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② 해외지주회사가 ①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배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90% 이상일 것	소득금액비율이 <u>각 사업연도말</u>
	<u>현재</u> 90% 이상일 것

〈개정이유〉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 §16②, 국조령 §36)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면제	□ 제출면제 범위 확대
*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 특수관 계인의 요약 손익계산서 [®]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개별기업보고서·통합기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면제	○ 면제 범위 추가
<추 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억원 이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 금액 합계 2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1 N A1 A1 1 =1 # . * 1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 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련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국조법 §25②·85 신설, 국조령 §10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혼성금융상품 거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국내에서는 부채로 보나, 국외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이 (적용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ㅇ (좌 동)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서류제출)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시 이자비용조정명세서를 제출 	○ 서류 제출 의무 명확화
<신 설>	이자비용조정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품별 3천만원 한도
	- (기한내 미제출시) 혼성금융상 품별 2천만원
	 -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거래 신고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삼정 KPMG

감사합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